

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7.11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■ 제안이유

- 주차장법 제12조, 지방재정법 제36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,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계획에 관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■ 부지매입 및 건설배경

- 사업지역은 주민 대다수가 자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 간의 주차 다툼이 빈번한 지역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건의가 폭증하는 지역임.
- 당사업부지는 장방형이며 주차장 건설을 위한 유휴부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주차면 배치에 유리하며 종교 부지로서 소유자 재단법인 마리아회 유지재단의 매각동의가 있었고, 또한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 분석 결과 동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승인하였음.

■ 공영주차장 타당성 검토

- 사업지 동측 30m지점에는 망원동의 중앙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한마음길(폭10m)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, 서측 남북으로 새나래8길(폭 8m)은 재래시장인 망원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차량통행 불편.
- 사업지 주변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전형적인 주거 지역으로 주차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며, 망원시장 이용객의 추가 수요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함.

■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계획

○ 사업개요

구 분		망원동 공영주차장
위 치		망원동 403-2
면 적		3,152.4㎡ (약950평)
건 설 규 모		철골자주식 2층3단 주차면 300대
소요예산	계	18,378백만원 (시비:7,559 구비:10,819)
	부지매입	12,289백만원
	건설비	6,089백만원
재 원 기 준		구 주차장특별회계 및 시보조금
사 업 기 간		2008. 1월 ~ 2008.12월

○ 주요 추진경위

- 2007. 1월 : 주차장건설 타당성검토 완료
- 2007. 6월 : 재단법인 마리아회 유지재단 부지 매각동의
- 2007. 8월 : 공유재산 심의 (적정)
- 2007. 9월 :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분석 조건부 승인

■ 부지매입방법

- 매입가격 산정 :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68조에 의거 2개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협의 매수

■ 향후 추진계획

- 2007.11월 :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반영
- 2008.1~2월 : 토지 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결정
- 2008.6~12월 : 주차장 조성

위치도



현장사진

